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49
------------	------

2024년 6월 1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기덕 의원 외 18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32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 또한, 안전교육으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장치 안전교육의 근거 마련

## 나.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5항)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1항제5호)
- 안전교육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4. ~ 6. 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sup>1)</sup>

-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주·정차위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

---

1)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보행자전거과-8235, 2024.6.11.)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시장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근절사항 등을 안전교육 내용 등에 포함시키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3조제5항 신설)

- 안 제3조제5항<sup>2)</sup>은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 제 32조 등에 따라 주·정차 금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21년 관련 법 개정<sup>3)</sup>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처벌근거 등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에서 파악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sup>4)</sup>를 살펴보면 '18년 150대에서 '23년 41,440대로 폭발적으로 증가 되었고 특히 안전사고<sup>5)</sup>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법률 제17891호, 시행 2021.5.13.).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80조제1항·제3항 등 신설, 제82조제2항제1호 등 신설)

구 분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2020.12.10.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면 허	면허필요	면허 불요	<b>면허 필요 (원동기면허 이상)</b>
이용연령	만 16세 ↑	만 13세 ↑	만 16세 ↑
통행방법	차도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보도’ 통행불가)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 처벌)	-	의무 有, 벌금 無	<b>20만원 이하 과태료</b>
안전모 미착용	20만원 이하 범칙금	의무 有, 벌금 無	<b>20만원 이하 범칙금</b>
승차정원 초과	-	無	<b>20만원 이하 범칙금</b>

4) 서울시 권역 공유 PM 운영 규모(2023.12월 기준)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 PM업체: (2018년) 1개 업체 150대 → (2023년) 5개 업체, 41,440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이 제도나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보여짐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수립 사항 및 안전교육 관련(안 제4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6호 신설)

○ 안 제4조제1항제5호<sup>6)</sup>와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과 안전교육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5) 서울시 공유 PM 및 자전거 사고 건수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건수	PM	1,422	50	134	387	445	406
	자전거	8,492	1,471	1,766	1,802	1,779	1,674
사망자수	PM	8	-	1	1	1	5
	자전거	64	18	11	14	13	8
부상자수	PM	1,553	56	139	420	489	449
	자전거	9,371	1,573	1,950	2,018	1,969	1,861

※ 서울시 권역내 개인소유 및 공유 PM과 자전거를 포함한 건수(출처: 경찰청)

6)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4조(사업추진 등)

-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의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2019년 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7)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규정을 마련하여 '21년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sup>8)</sup>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본 계획<sup>9)</sup>’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공유 PM 주차구역 신설 및 PM 안전교육<sup>10)</sup> 시행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7)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시행)

-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함(별표)  
→ 견인료: 40,000원 / 보관료: 30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

8) 서울시 주·정차 위반 PM 견인제도 운영(2021.7.~)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견인대상: 서울시 각 자치구 내 주·정차 위반 공유 PM(즉시 견인구역 / 일반견인구역 구분)
  - 견인주체: 25개 자치구별 협약된 23개 견인대행 업체
  - 견인시간/비용: 평일 07시~20시 /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 신고방법: 모바일 웹사이트(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신고
- 9) '24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기본계획(보행자전거과-4495호(2024.3.26.))

<주요 추진계획>

- 1) 공유 PM 주·정차 위반 견인제도 강화    2) 공유 PM·자전거 법률 제·개정 대응
  - 3) 공유 PM 주차구역 조성 및 관리        4) 공유 PM 대여업체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 5) PM·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 조성        6) 공유 PM·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개선
- 10) '24년 자전거·PM 안전교육 추진계획(보행자전거과-1792호, 2024.3.25.)

- 추진기간: 2024.3월~12월
- 추진방법: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기관 자체운영
- 교육장소: 교통안전체험장, 한강공원, 학교시설 교육장 등/ 교육대상: 서울시민
- 교육내용: 자전거·PM 교통 안전교육전반(운전자 통행방법, 안전사고 사례, 주정차 기초질서 등)
- 2024년 교육목표: 56,000명 (2023년 추진성과: 56,568명, 목표인원 30,415명 대비 186% 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위반 민원신고 접수 건수<sup>11)</sup>는 '23년도 기준 140,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31.8%가 증가되었고,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2년도에 발생한 공유 PM 사고 406건 중 무면허 105건, 음주 51건 으로 나타났고, 이 중 안전모 착용률은 2.9%에 불과하여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미준수<sup>12)</sup>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볼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1) 공유 PM 신고시스템상 주·정차 위반신고건수

- 2022년 96,181건 → 2023년 140,926건(전년대비 약 31.8% 증가)

12) 2022년 사고 406건 중 무면허 105건, 음주 51건, 안전모 착용률 2.9% (서울시 내부자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4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성흠제, 왕정순,  
우형찬, 유정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홍국표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 조항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하고,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 또한, 안전교육으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장치 안전교육의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5항)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1항제5호)

다. 안전교육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 사항 규정 (안 제9조제 1항제5호 및 제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안전교육 등) ① ----- -----</p>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 (생략)

② (생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  
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항제5호 및 제9조(안전교육 등)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운영	117,050
제9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1,435,303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117,050천원('24년 예산안)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의 주요내용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붙임 2] (마포구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 서울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교통안전 인증제

- 일 시 : 2024. 04. 28(일), 11:00~13:00
- 장 소 : 마포구 에너지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마포 평화의 공원 내 위치)
- 인 원 : 50명 이내
- 접수기간 : 2024. 04. 02(금) ~ 26(금) 15시 까지
- 기타사항
  - :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수료통보일 기준 1년간
  - 성함, 전화번호, 따릉이앱 ID 작성 제출(미제공시 감면 불가)
  - 서울시설공단 이용자-합격자 정보 매칭 감면 처리
  - 앱 내 이용권 결제 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

□ 교육 및 인증제 시간표

일 정	내 용
11:00~11:50	공동안전교육 -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2:00~12:30	자전거 안전교육 - 자전거관련법규 및 범칙금 등 -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 및 점검사항 - 자전거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 자전거 구조와 기능
12:30~13:00	PM 안전교육 - PM 관련법규 및 범칙금 등 - 안전한 PM 이용방법 및 점검사항 - 안전 이용 관련 영상 시청